

#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



새해에도 많은 것이 변한다.  
 우선 일부 읍·면에서만 실시하던  
 중학교 의무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 
 일본 비자의 체류기간과  
 유효기간이 대폭 늘어난다.  
 또한, 공공시설 금연구역이 확대 된다.  
 그리고 종합소득세율이 평균 10% 인하된다.  
 제조물 책임제도가 도입돼  
 제조사의 책임이 한층 무거워진다.  
 각 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질  
 주요 내용 정리하였다. (편집자)

## 민원 · 병무

- ◆ 일본 단기 비자 체류기간 연장 = 일본 입국 비자의 체류 기간이 현재의 15일에서 90일로 연장. 비자 유효기간은 방일한 적이 있거나 일정 소득이 있으면 5년, 비자를 처음 신청하면서 일정 소득이 없으면 1년.
- ◆ 웹사이트 신청 민원 확대 = 현행 호적 등초본 등 27종에서 지방세 납세증명. 장애인 증명. 검정고시 성적 증명 등 20여종 추가.
- ◆ 무인 민원발급기 확대 = 현행 건축물 관리대장, 개별공시지가 확인원, 자동차 등록원부 등 10종에서 병적증명서, 주민등록 등초본, 의료보험대상자 증명 등 15종 추가
- ◆ 주민등록 공동이용 시스템 운영 = 행정기관

에서 개인의 주소 등 주민등록 사항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시스템과 연결된 단말기를 통해 직접 확인하며 민원인에게 등·초본 요구를 폐지.

- ◆ 재산제 과세 기준일, 납기일 조정 = 과세 기준일을 6월 1일로, 납기일은 7월 16~31일로 조정.
- ◆ 전자문서 관인 적용 신설 = 토지대장등본, 호적등본 등 2백50여종의 서류에 전자관인 인정제 도입.
- ◆ PC방 신고제 폐지 = PC방 사업을 시작할 경우 시·군·구에 신고하던 제도를 폐지. 일정 시설을 갖추면 PC방 개설 가능.
- ◆ 비디오, 게임의 광고, 선전물 사전검열 = 청소년 보호를 위해 비디오, 게임 관련 광고, 선전물의 유해성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심사

하며 위반시 1천만원 이하 벌금.

- ◆ **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취득, 등록세 중과세 제외기간 연장** =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.
- ◆ **인터넷으로 입영일·부대 선택** = 입영이 연기된 대학생들이 입영을 원할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(<http://www.mma.go.kr>)를 통해 입영부대(훈련소)와 입영 날짜를 선택. 입영일 연기 신청도 가능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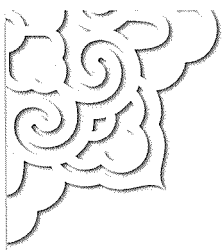
## 교육

- ◆ **중학교 의무교육 실시** = 전국 중학교 1학년 신입생의 입학금, 수업료, 교과서 대금 전액 면제.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유급제 도입.
- ◆ **만 5세 어린이 무상교육 확대** = 전국 법정 저소득층, 농어촌 지역 저소득층의 만 5세아는 유치원을 다니면 입학금·수업료 전액을 면제받고, 어린이집을 다니면 월 11만9천원 지원. 도시 지역 저소득층의 만 5세아는 국·공립 유치원을 다니면 수업료·입학금 전액 면제, 국·공립 어린이집은 월 6만원, 사립 유치원, 어린이집을 다니면 월 10만원 지원.
- ◆ **7차 교육과정 고교 도입** = 선택 교과 확대. 수준별 수업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7차 교육과정이 고교 1학년에게 적용.
- ◆ **자립형 사립고 시범 운영** = 민족사관고, 광양제철고, 포항제철고가 학생 선발, 교육과정 운영, 등록금 책정 등에서 자유로운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.
- ◆ **대학 교원 계약임용제 실시** = 대학 교원은 근무기간, 급여, 근무조건, 업적 등을 계약으로 정해 임용.
- ◆ **국립 산업대의 등록금 자율화** = 국립 산업대 총장은 수업료, 입학금을 대학 교육 여건을 고려해 자율 결정.

- ◆ **전문대 수업연한 연장** = 전문대의 보건, 의료계열 9개 학과 이외에 유아교육 등 1백35개 학과가 2년제에서 3년제로 연장.
- ◆ **전문대 재입학 모집인원 제한 폐지** = 일반대, 전문대 졸업 뒤 재입학자에 대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제한(정원의 10%) 폐지. 단 보건, 의료계열과 유아교육과는 각각 입학정원의 20%, 10% 이내에서 모집 제한 유지.
- ◆ **전문대 졸업자의 지방대학 편입 확대** = 전문대 졸업자가 전문대와 교육과정을 연계기로 협약을 한 지방 소재 4년제 일반대에 편입할 때 입학 정원의 3% 범위 안에서 전문대 졸업자끼리만 별도 전형.
- ◆ **문하생 학력, 학점 인정제** =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중 고졸 이상 학력 소지자는 학점 은행제와 연계해 대학 졸업 학력에 해당하는 1백40학점 인정해 학사학위 수여. 문하생 중 고졸 이상 학력 소지자는 3~40학점 인정.
- ◆ **병역의무 연기** = 대학원 재학생 입영 연기 연령을 현재 4학기제 만 26세, 5.6학기제 만 27세에서 모두 28세로 연장.

## 교통·환경

- ◆ **기내 난동, 휴대전화 사용 처벌** = 기내에서 승무원 폭행 등 난동을 부릴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 벌금. 흡연이나 휴대전화 사용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백만원 이하 벌금.
- ◆ **교통사고 형사 면책범위 확대** =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 금액에 상관없이 합의되거나 종합보험, 공제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불입건 처리.
- ◆ **자동차 등록서류 간소화** = 자동차 등록 때 주민등록등본과 자동차 제작증의 제출의무 폐지. 시도간 주소지 변경시 변경등록신청서, 자동차등록증, 번호판, 자동차 이전등록시 이전등록신



청서와 양도증명서, 양도인 인감증명서만 첨부.

- ◆ **운전면허시험 그림문제 출제** = 필기시험 50문항 중 5문항을 실제 도로 상황을 보여주고 운전자의 대처 방법을 묻는 그림 문제로 출제.
- ◆ **자동차 주행거리 변조 처벌 강화** = 중고차 매매시 주행거리를 실제보다 적게 조작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.
- ◆ **경범죄 등 미납자 즉결심판 면제** = 경범죄, 교통위반 범칙금을 미납해 즉결심판이 청구된 사람이 선고 전에 범칙금의 1.5배를 납부할 경우 즉결심판 취소.
- ◆ **국내선 항공편 탄력요금제** = 현재 주말, 주중, 성수기·비수기로만 구분된 국내선 항공요금일뿐 아니라 시간대별로도 세분화.
- ◆ **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** =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백화점 주변 등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혼잡통행료 징수.
- ◆ **산불피해 복구비 지주 부담 면제** = 산불 피해 지역 복구사업 때 지주 부담 없애고 국비와 지방비만으로 시행.
- ◆ **습지보호지역 관리강화** = 습지보호지역과 습지보전시설 이용료가 부과되며 훼손된 습지개천지역에 대해서도 출입제한.

### 보건·복지

- ◆ **지역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** = 월 소득액의 5%에서 6%로 20% 인상.
- ◆ **국민연금 전액 소득공제** = 보험료의 50%만 공제하던 것을 전액공제기로, 보험료 인턴넷 납부 시행.
- ◆ **최저생계비 3.5% 인상** = 4인 가구 기준 월 99만원으로 인상.
- ◆ **대학생 기업연수비 지원** = 졸업 후 취업을 돕기 위해 재학생이 기업연수를 통해 관심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경우 월 25만~30만원의 연수

수당과 재해보험료 지원.

- ◆ **금연구역 확대** = 정부 중앙청사·초중고·보육시설·병원 등 건물내 금연, PC방·만화방·실외경기장 등은 금연구역 확대 설치 의무화.
- ◆ **우리사주 성과급 지급** =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 등을 우리사주로 지급.
- ◆ **출산휴가 확대** = 현행 출산 전후 60일에서 90일로 연장.
- ◆ **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 지원** = 성폭력으로 인한 외상이나 산부인과적 치료 외에 정신과 치료비, 정황 검사비, 진단서 발급 등 의료비 총액 지원.
- ◆ **공무원 육아휴직제도 개선** = 3세 미만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공무원의 임신 또는 출산시 휴직 가능.
- ◆ **간접차별 개념 도입** =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직접적인 남녀 차별뿐 아니라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간접 차별도 시정권고 대상에 포함.
- ◆ **의·약 담합 처벌 강화** = 특정의료기관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게 약제비를 면제해주는 등의 행위를 할 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.

### 세금

- ◆ **종합소득세율 인하** = 4천만원 이하 소득세율을 20%에서 18%로 내리는 등 소득구간별로 평균 10% 인하.
- ◆ **소득공제 확대** = 근로소득이 1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 40%에서 45%로, 3천만원 이하일 경우 10%에서 15%로 각각 기본공제 폭 확대, 경로우대자, 장애인 추가공제액을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인상, 장애인특수교육비 공제(연 1백50만원), 사립학교 장학금도 전액 소득 공제.
- ◆ **우리사주제도 세제지원** = 종업원 출연금을 연

2백40만원 한도에서 전액 소득공제, 기업 출연금은 전액 손비(損費) 인정.

- ◆ **세금우대종합저축 이자 분리과세** =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분리과세.
- ◆ **비과세저축 통합한도제 적용** = 현재 1인1통장 제도를 없애고 해당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통합관리. 적립식 저축의 경우 월별 납입에서 분기별 납입으로 변경.
- ◆ **중소기업 세제지원** = 자동화·정보화 설비 투자액의 세액공제율을 5%에서 10%로 올리고 수도권 내 투자도 세액공제 허용. 전자상거래 구매대금의 0.5%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. 특별세액감액제도 대상업종에 종자 및 묘목생산업과 축산업을 추가.
- ◆ **상업방송 수신료에 부가세 부과** = 위성방송, 종합유선방송, 중계유선방송 수신료에도 부가세 부과.
- ◆ **9개 준조세 폐지** = 교통안전분담금,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분담금, 국민건강증진부담금, 농지전용부담금, 산림전용부담금 등 9개 부담금 폐지.
- ◆ **양도소득세 세율 인화** = 2년 미만 보유 40%에서 1년 미만 보유 36%로 낮추는 등 양도세율 인하.
- ◆ **교육비 공제대상 확대** =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 교육비를 공제대상에 추가하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연 1백5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.
- ◆ **생활·레저용품 특별소비세 인하** = 골프용품, 모터보트, 공기조절기(30→20%), 프로젝션 TV(15→10%), 고급사진기, 모피, 카펫(30→20%)에 대한 특소세 인하.

탁 혐의가 있는 5천만원 이상(외환거래는 1만달러 이상)의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보고.

- ◆ **코스닥 신용거래 허용** = 증권거래소 상장 주식에만 인정돼온 신용거래를 코스닥등록 주식에까지 확대.
- ◆ **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** = 해당법인 임직원에게만 부여되는 것을 해외영업에 기여한 관계회사 직원에게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.
- ◆ **유통업자의 신용카드업 진입요건 완화** = 백화점 등 유통업자가 카드업을 겸업하려면 현재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이를 등록제로 전환.
- ◆ **간접투자신탁 제도 도입** = 다른 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간접투자신탁 판매 허용.
- ◆ **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변경** = 자산규모 30위까지 제한해온 것을 출자총액제한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, 채무보증·상호출자 금지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변경.
- ◆ **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절차 간소화** = 중소기업진흥공사에 접수함과 동시에 보증기관의 보증심사를 거쳐 직접 대출방식으로 운영. 제출 서류를 52종에서 28종으로 축소.
- ◆ **벤처기업의 합병 절차 간소화** = 채권자의 이의제출 기간 1개월→10일, 주총소집기간 14→7일, 합병계약서 공시기간 6→1개월로 합병 소요기간 단축.

### 소비자 · IT

- ◆ **제조물책임제도 도입(7월)** =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때 제조자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책임. 적용대상은 제조, 가공된 모든 동산(動産)이며, 배상청구 기한은 손해와 제조업자 등을 안 날로부터 3년 내.
- ◆ **인터넷쇼핑몰업 피해보상 규정 신설** = 상품

### 금융 · 기업

- ◆ **자금세탁 방지제도 시행** = 금융기관이 자금세



과 용역이 인도되지 않거나 늦게 도착할 경우 계약해제, 손해배상 받을 수 있고,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제품을 교환받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 규정 신설.

- ◆ 인터넷콘텐츠업 보상 규정 신설 = 내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지될 때 중지시간의 세배를 무료로 연장.
- ◆ 전자화폐 보상기준 신설 = 1만원 이상 전자화폐를 유효기간 내에 60% 이상 사용하면 나머지 금액을 환급, 유효기간이 지나면 미사용액의 10%를 공제하고 재충전 또는 환급.
- ◆ 소비자피해보상 강화 = 애완견의 질병·사망으로 인한 피해보상 기간을 구입한 뒤 7일 이내에서 2주일 이내로 확대. 이사화물 사업자의 고의·과실로 운송계약을 해제할 경우 이사 전날에 통보시 손해배상액을 약정운임의 20%에서 40%로 증액.
- ◆ 소비자 경품총액 한도액 예외 인정 = 소비자 경품의 제공총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경품이 예상매출액의 1%를 초과해도 부당한 경품 제공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.
- ◆ 이동전화요금 인하 = SK텔레콤 표준요금 기준으로 기본료가 1만6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, 통화료가 10초당 22원에서 21원으로 인하되는 등 평균 83% 인하.
- ◆ 전자서명 인정 범위 확대(4월) = 공개키기반 기술만 인정하던 현 전자서명의 범위를 확대. 지문·음성·홍채인식 등도 전자서명으로 인정.
- ◆ 우편요금 조정 = 보통우편요금은 1백70원에서 1백90원으로 인상, 빠른우편 요금은 3백40원에서 2백80원으로 인하. 국제 통상 우편요금은 10.4% 인상.

가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 선정 가능.

- ◆ 수도권 이외 지역 개발부담금 부과 중지 = 서울, 경기, 인천 이외의 지역에서 2002년 1월 1일 이후 인가받는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음.
- ◆ 접도구역제도 개선 = 증축 규모를 30㎡로 확대, 농업용 창고 신축 허용. 준도시지역 내 취락지구는 지정대상에서 제외.
- ◆ 시장 재개발, 재건축에 대한 특례 적용 =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시장 재개발, 재건축 때 준주거지역의 용적을 적용, 과밀부담금 50% 감면, 도시계획 변경 절차 7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.
- ◆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= 민간 관리주체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안전 점검을 못할 경우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규정 신설.
- ◆ 소규모 농지 취득 규제완화(4월) = 농사를 시작하려는 사람이 농지취득 때 자기 땅과 빌린 땅을 합쳐 1천㎡ 이상이면 농지취득 허용.
- ◆ 농업보호구역 강화(4월) =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1백㎡ 미만의 음식, 위락, 숙박시설 설치가능했던 것을 금지.
- ◆ 유전자변형(GMO) 표시 대상 농산물 확대(3월) = 기존의 콩, 옥수수, 콩나물에 감자 추가.
- ◆ 해양환경개선 부담금 신설 = 폐기물을 바다에 버릴 경우 육상처리비용과 해양배출비용의 차액 범위 내에서 부담금 부과.
- ◆ 활어도 원산지 표시제 도입 = 원산지 표시에서 제외된 활어도 횡집 등에 원산지 표시하도록 규정.
- ◆ 어업 피해 복구 지원 확대 = 죽은 양식물 철거비 현행 30% 지원에서 1백% 지원으로 증액.

**주 택 · 토 지**

- ◆ 토지 보상액 산정 개선(하반기) = 사업시행자